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5일, 조승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8.)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승환 의원)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수산기자재산업 현황과 제정안의 취지 검토

□ 최근 수산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어업경비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고, 농업 분야와 달리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기계화·자동화와 관련된 현황 파악 및 정책추진이 부진하여,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산기자재는 통상 수산업(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양식업)에서 사용·활용되고 있는 기계·기구(도구)·자재·설비 및 자동화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¹⁾

1) 수산기자재의 주요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수산기자재의 종류는 [참고자료] 1 참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어업 기자재	어선	선체·기관	선박구조
			주기관, 보조기관
		선박설비	조타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계선설비
			하역설비
			방배수설비
			해양오염방지설비
			통신장비
			항해장비
	어구 및 속구류	어망류	어망, 로프, 낚시
		속구류	부이, 샤클, 전개판
	어업기기	전자장비	어탐기, 집어등, 안전기

수산물가공산업은 이러한 수산물가공품의 연구·개발·생산·보급·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수산물가공품 산업의 규모는 세계시장의 경우 107.6조원, 국내시장은 2.6조원으로 추정됨(2021년 기준)²⁾.

그런데 국내 수산물가공업계는 전반적으로 영세³⁾하고, 기술은 노르웨이·덴마크·일본 등의 선진국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

		기계장비	갑판기기, 조어기기, 제어기기
염업 기자재	염업 기자재	생산기기	바닥재
		운반기기	레일, 운반차
		설비자재	해주, 창고
			선박
양식 기자재	설비 기자재	해상양식기자재	가두리
			수하식 등
			수조
		육상양식기자재	펌프 및 밸브
			가온 / 냉각기기
			여과시스템
			산소발생기
	제어 기자재	모니터링시스템	자동시스템, 수동시스템
		위생·환경시스템	센서 및 전자 장비, 세척기, 소독기, 울타리
	급이 및 채취 기자재	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제
		약품	양어용 약품
		급이장비 및 채취장비	급이장비
			채취장비
	양식용 소모품	양식용 소모품	전복가두리 전용소모품
			일반가두리 공통소모품
			기타
수산물 가공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수산물 전처리(1차) 가공기계	(전처리단계)피쉬펌프, 수중식호퍼, 선별기, 동결대차·급속동결기, 해동기, 세척기, 탈수기 등의 기계 및 계량·계측·제어·관리 시스템(기관 및 소프트웨어)
		수산물 단순(2차) 가공기계	제거기, 절단기, 분쇄(연육)기, 혼합기·균질기, 성형기, (온·열풍)건조기 등의 기계 및 계량·계측·제어·관리시스템(기관 및 소프트웨어)
		수산물 고차(3차) 가공기계	염장기, 볶음기, 구이기, 튀김기, 자숙(스팀)기, 훈연기, 숙성기, (동결·저온진공)건조기, (미생물)발효기, 추출기, 여과기, 농축기, 정제기, 제환기, 타정기, 과립기, (생선소시지 등)충진기 등의 기계 및 계량·계측·제어·관리시스템(기관 및 소프트웨어)
수산물 유통 기자재	수산물 포장 기자재	수산물 포장기계	(포장)살균·멸균기, 검출기, 인쇄기, 포장기, 냉동기 등의 기계 및 계량·계측·제어·관리시스템(기관 및 소프트웨어)
		수산물 포장재	캔, 병, 팩, 용기, 캡슐 등

*자료 : 수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연구(2017, 해양수산부)

2) 수산물가공품 산업 범위 및 시장규모는 [참고자료2] 참조

3) 국내 업체(1,189개): 소기업 98%, 평균 종사자 5인 이하, 평균 매출액 약 14억원

국산화된 어업용 항법·전자장비를 제외하고는 기술적·가격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임.

- EU(친환경·디지털 수산·양식기자재), 일본(원격 양식관리 기자재) 등 선진국은 기술 경쟁력을, 중국은 어망 등 어구와 저가형 가두리 양식장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기자재 역시 고가의 장비는 노르웨이·일본 등에서, 어망 등 어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산현장의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2) 현행 수산기자재 지원 관련 법률현황과 제정안의 취지 검토

- 현재 수산기자재에 대한 지원은 크게는 일반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고, 그 밖에 「양식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진흥법」 등 각 수산기자재의 특성에 맞는 개별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⁴⁾.

4) 수산기자재 및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음.

[수산기자재산업 지원 관련 법률 예시]

법률명	조항
「수산업·어촌 발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법」	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양식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보급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생산·유통·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소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나. 염전 관련 시설·기구·자재 등의 개발·제조·유통·판매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또한,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기술은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을 통해 해양수산물과학기술의 하나로써, 신기술 인증·표시·취소·지원 등 기술과 관련된 일반적 규정을 적용·지원받고 있고,

정부(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기준 13개 사업에 약 1,218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수산기자재 관련 정부예산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내용	‘23년 예산 (백만원)	지원조건
수산 장비 임대	고가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1,395	국비 50% 지방비 50%
수산장비구입지원 (용자)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비용 용자 지원	2,850	용자 80% 지담 20%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연근해어선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지원	4,179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생분해성어구보급	어장환경 오염방지 등을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5,900	국비 70% 지방비 30%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	42,482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게차, 팔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1,073	국비 50%, 자담 50%
산지 위생안전 물류지원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동선별기 등 지원	520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가공설비(김 이물질 선별기 등) 지원	김 등 수출수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한 가공설비 지원	4,248	국비 30% 자담 7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및 기반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25,300	국비 70% 지방비 30%
양식장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수열히트펌프, 복합열히트펌프, 인버터, 전기추진기, 수산가공분야(마른 김 가공) 에너지절감시설 등	18,529	국비50~60% 지방비 20~30% 자담20~30%
어업현장 현안해결 지원사업(R&D)	수산기자재 고도화 분야(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개발	6,274	출연금
수산물 신선유통	신선유통 표준화, 수산물 유통 현안해결	8,544	출연금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스마트 기술개발(R&D)	기술개발, 수산식품 스마트가공 기술 개발		
수 산 시 험 연 구 (R&D)	미래선도 수산기술개발 및 수산현 안 대응기술 개발	505	출연금

* 자료: 해양수산부

□ 따라서, 현행 법체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산기자재 관련 지원을 하는 것에는 각 분야별 법령에 따라 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유통업 등 개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산업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및 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마련,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및 개발·보급 촉진,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촉진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체계적·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3) 제정안 심사 시의 고려사항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점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법」, 「사료관리법」 등 다른 법률과 규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선 등 일부 기자재를 수산기자

재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제외의 필요성 및 제외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도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반면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지방청 등 기존 조직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 관련 R&D 기관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별도 기관 지정에는 유사·중복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도 전담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담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안 제2조	○ 수산기자재 및 수산기자재산업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4조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방향, 현황 및 전망, 생산·보급·수출 촉진, 스마트화 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 수산기자재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개발 및 보급 촉진 - 신기술(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기술 포함) 수산기자재

조문	주요 내용
	지정 및 취소, 국가의 공공기관, 수협 등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수산물기자재 임대사업,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수산물기자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수산물기자재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 수산물기자재 표준 개발 및 보급, 친환경 및 안전성에 대한 품질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기자재 제조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 제품 사용설명서 제공, 제품규격 정보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구입처 제공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수산물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과 공유재산 특례 - 수산물기자재 산업 육성에 적합한 지역 또는 해역에 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비 지원 가능 - 클러스터 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대부기간 등 공유재산 특례 규정

□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수산물기자재산업 육성 법안」(의안번호 제2101622호,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스마트수산물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9741호)이 각각 발의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본 제정안에서는 과거 발의된 법률안 대비 수산물기자재산업 관련 심의회 설치 규정이나 수산물기자재산업진흥원 설립 규정을 삭제하고 수산물기자재 검정제도를 품질인증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음.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으로 4장, 30개 조문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수산기자재 통합정보시스템)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제3장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등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제9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추진)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제12조(수출 지원 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제15조(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제16조(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사후관리 등) 제21조(안전교육) 제2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제4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청문)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물의 생산·가공·유통·보관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제정안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비교]

제 정 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제4조(자금 지원)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의2(수요조사 등)
제6조(수산기자재 통합정보시스템)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제7조(수산기가재육성 전담기관)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제9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취소)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제8조(공 동 이 용)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제11조(수산물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12조(수출 지원 등)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제15조(수산물자재산업의 표준화)	
제14조(수산물자재의 품질인증) 제15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0조(검정의 무효·취소 등)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2조(안전관리)
제21조(안전교육)	제12조의2(안전교육)
제22조(수산물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제14조(자료요구)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청문)	제15조(청문)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제18조 *삭 제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주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8조는 1999. 3. 31.에 삭제된 조문임.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 및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제명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을 밝히고(안 제1조), ‘수산기자재’, ‘수산기자재산업’, ‘수산기자재사업자’,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를 정의하며(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수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수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수산기자재산업”이란 수산기자재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

· 이용 · 기술훈련 · 안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수산기자재사업자”란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란 수산기자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 · 조성된 지역 및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제명 및 제1장 총칙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는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

(1) 정의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안 제2조에서 “수산기자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것은 다소 포괄 위임으로 비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수산기자재의 종류가 다양⁵⁾하고,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5) 수산기자재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1] 참조

모두를 수산기자재로 인정할 경우 수산업뿐 아니라 일반 산업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는 냉장·냉동고, 운반구 등까지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⁶⁾.

-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의 정의와 관련해 다른 법률과 지원·규제 등의 규율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선과 그 항행설비, 사료 및 수산생물용 의약품, 소금산업 기자재 등 일부 기자재는 제정안의 정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어선법」⁷⁾, 「사료관리법」⁸⁾, 「약사법」⁹⁾, 「소금산업 진흥법」¹⁰⁾에서

6)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어업용 기자재와 다른 대표적 수산기자재 중 표준화 인증이 가능한 기자재를 선별한 후 부령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7)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5조(무선설비),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8)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사료검사),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제13조의2(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된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품질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수산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¹¹⁾).

[수산기자재의 범위 및 타법과 중복규율소지가 있는 항목]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타법과 중복규율 소지가 있는 내용	
어업 기자재	선체·기관	선체, 선박구조, 도면 등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선체, 어선의 설비 관련 - 어선의 검사·건조 허가·등록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지정사업장 - 어선거래시스템, 어선중개업, 무선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	
		엔진 등 주기관, 보조기관		
	선박설비	조타, 방배수, 방배수 설비		
		구명, 소방 설비		
		하역, 계선 설비		
		통신, 항해 장비		
	어망류	어구, 어망, 로프 등 어로장비		
		낙싯바늘, 낙싯대 등 낙싯장비		
	속구류	부이, 샤클, 전개판 등		
	전자장비	어탐기, 집어등, 안전기		
기계장비	갑판기기, 조업 및 제어 기기			
염업 기자재	생산 설비·자재	바닥재, 해주, 창고 등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른 제조시설 등 현대화 - 염전기구·자재, 소금 생산·제조시설, 포장·용기·포장설비 등 현대화·규격화·자동화 시책 수립 및 자금지원	
	운반기기	레일, 운반차 등		
양식 기자재	해양양식 기자재	관리선, 가두리, 수하식 자재 등		
	육상양식 기자재	수조, 펌프·밸브, 열관리 기기		
		여과 및 산소발생 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제어시스템		
	위생·환경 시스템	센서·전자장비, 세척·소독기		
	사료 및 약품	배합사료 및 보조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검사 등	
		항생제 등 양어용 약품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규정 등	
	급이 장비 및 채취장비	사료 배합기, 급이기 등		
크레인, 선별기, 피쉬펌프 등				

11) 유사입법례인 「농업기계화 촉진법」도 ‘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타법과 중복규율 소지가 있는 내용
	양식용 소모품	전복 등 양식 소모품	
가공 기자재	수산물 가공기계	(전처리) 해동기, 세척기, 탈수기	
		(단순) 할복기, 혼합기, 성형기	
		(고차) 추출기, 농축기, 정제기	
	수산물 포장기계	살균, 멸균기, 검출기, 포장기	
	수산물 포장자재	캔, 병, 팩, 용기 등	
	수산물 위생·안전 기자재	haccp 기자재, 포충기, 위생복	

자료: 해양수산부

2.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등(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제2장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중 **안 제4조**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수산기자재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6조는 수산기자재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수산기자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수산기자재산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산기자재의 생산·보급·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기자재의 스마트화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산기자재 관련 기술훈련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보급된 수산기자재의 만족도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산기자재 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산기자재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정부의 정책집행 기반을 조성하여 법률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진흥법의 일반적인 규정임.

이 중 제4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상 해당 심의회에서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

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산기자재육성 육성 법안」 및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본 제정안과 달리 법률에서 별도의 심의기관을 설치¹²⁾하여 계획 수립 관련 심의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¹³⁾에 따라 신규 심의회 설치 대신 해양수산부 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음.

(2) 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지정

- 다음, 안 제7조의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의 단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은 해양수산부 본부나 지방청, 지자체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어 지정의 실익이 없고, 수산기자재 관련 R&D 기관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있으므로 별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12) 각각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심의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13)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전담기관이 아닌, 산업육성 업무 중 정부조직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그 밖에 **안 제5조제3항**에서 인용조문의 잘못¹⁴⁾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4) “제3항에 따른 평가” → “제2항에 따른 평가”로 수정

3. 수산기자재 신기술 지정·개발 및 보급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제3장(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등) 중 **안 제8조**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고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수산기자재를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한 수산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나. 검토의견

(1) 신기술 수산기자재 개발·보급 촉진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마련 및 우선 구매 등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구매하려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 신기술 수산기자재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 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수산기자재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수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된 관계 정부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물

「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시행 중인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대상에서 수산기자재를 분리하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93건¹⁵⁾에 대해 신기술 인증을 한 바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이 ‘기자재’의 인증인지 ‘신기술’의 인증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신기술 관련 입법례 비교]

제 정 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수산기자재를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5) 해양공학 25건, 해안·항만 16건, 수산 15건, 해양환경 10건, 해양수산생명 9건, 해양재해 7건, 기타 11건

제9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한 수산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2)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우선구매 등

□ 안 제10조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기술 수산기자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가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와 같은 우선구매는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등 논의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은 제정안의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촉진, 수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1조는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임대사업 운영방법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이고,

안 제12조는 수산기자재의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 조는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수산기자재사업자의 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 기자재 임대사업자(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수산기자재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여성수산인 및 고령수산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수산기자재를 직접 보관 및 관리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 수산기자재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구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임대료의 사용, 임대사업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수산기자재사업자는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수산기자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수산기자재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수산기자재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나. 검토의견

(1)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근거 마련 등

□ 안 제11조는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원 등을 통해 임대사업을 촉진하며, 임대사업자의 사업내용·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50% : 지방비50%)의 형태로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수산장비 임대 및 이동수리소 운영에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안 제11조는 이와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으로 법제화하여 법률에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고, 수산기자재의 임대 활성화를 통해 수산인들의 수산기자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16)의 유사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2) 협회의 설립 등

□ 안 제14조는 수산기자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기자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수산기자재의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현재 설립된 수산기자재 협회도 (사)한국수산기자재협회('15.9월~), (사)한국양식기자재 생산자협회가('17.11월~)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일률적으로 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다양한 수산기자재의 협회 설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 관련 입법례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⁷⁾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품목별·지역별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기자재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정안과는 일부 차이를 보임.

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

5.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품질인증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5조는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수산기자재산업의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기자재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한 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그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기자재 인증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수산기자재를 지원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된 수산기자재의 우선구매 권고
3. 그 밖에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⑤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의 종류, 품목·기준·절차 및 방법, 인증표지의 기간, 사후관리 등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은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지원

□ 안 제15조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 개발 및 보급,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산기자재의 품질향성과 경쟁력 강화, 수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 수산기자재의 품질향상 및 호환성 확보,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관련 표준의 정립이 필요함에도 현재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산업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 제조업체별로 수산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¹⁸⁾,

산업진흥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유사 입법¹⁹⁾의 존재 및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부터 수산기자재 생산업체마다 제각각인 제품기준을 최소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8) 산업표준의 제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사무이나, 현재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산업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연구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수산물자재산업의 표준화를 도모하려는 안 제15조의 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2) 수산물자재의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 다음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산물자재의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에 대한 품질인증의 실시 및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품질인증 촉진을 위한 품질인증 소요 비용 지원, 품질인증 수산물자재에 대한 우선구매 권고 등 지원정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산물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부여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인의 안전성 확보 및 수산물자재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원양어선·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중 직무상 사망하는 인원이 어 2023년 기준 연 56명²⁰⁾이고, 바다에서 장기간 조업을 하는 어업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상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자재의 안전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수산물자재의 유실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자재의 환경친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유사입법례인 「농업기계화 촉진법」²¹⁾의 경우 농

2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4년 한국선원통계」 - 선원사고 및 재해보상현황(2023.12.31. 기준)

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업기계에 대한 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산물자재 육성법안」에서도 수산물자재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바 있는데,

이와 달리 제정안에서 수산물자재에 대해 의무적 검정이 아닌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검정의 경우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수산물자재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수산물자재의 표준 및 품질기준을 정하되 제조·수입업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자가 품질인증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²²⁾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팩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2) 품질인증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들 수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안 16조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인증표지 사용 및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품질인증 촉진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권고 등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품질인증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6조는 인증표지의 기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²³⁾ 등 품질인증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품질인증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유효기간의 규정 방식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임.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 지정

□ 다음, 안 제1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기자재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해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해당 조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은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을 위한 것이므로, 안 제18조의 인증기관 지정 목적을 수산기자재 표준화에서 품질인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사후관리, 안전교육 및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조성, 공유재산관련 특례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0조는 수산기자재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의 사용설명서 등 제공과 수리부품 및 구입처 제공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수산기자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2조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수산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산기자재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 제품규격 정보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구입처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의 수산기자재의 수리를 위해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산기자재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및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과 그 취소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1) 수산기자재 사후관리 등 근거 마련

□ 안 제20조는 수산기자재 제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산기자재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 제품규격 정보와 수리 부품 및 구입처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등의 이동수리소 운영,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산기자재 사용자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업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당 조항은 안 제15조에 따른 표준화, 안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과 연계되는 것으로, 표준화 및 규격화를 통해 수산기자재가 준수

해야 할 품질 기준 등을 정하고 품질인증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품질관리를 물건 제조·판매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산기자재의 지속적인 사용을 담보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조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수산기자재 제조·수입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국가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관련 입법례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도 사후관리 조항에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 다음으로 안 제22조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적합한 해역·지역에 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하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수산기자재 관련 클러스터로 해양수산부 예산사업인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등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의 수산기자재 관련 사업 주요내용]

□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기자재의 국산화,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전환 필요에 따라 수산양식 기자재 생산·유통, 실증 등이 연계되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수산기자재 신산업 육성
- (사업내용) 수산양식 기자재 단지, 공동물류장, 테스트베드(실증센터)구축
- (사업비 및 기간) 425억원(국비 212.5억원, 지방비 212.5억원), 2023년~2027년(5년)
-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2024년 예산) 25억원(국비)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수산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통한 기자재 품질 인증 체계 구축과 우수기자재 생산으로 수산 기자재 제품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육상, 해상 기자재 실증 및 시험센터
- (사업비 및 기간) 195억원(국비 97.5억원, 지방비 97.5억원), 2023년~2027년(5년)
-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2024년 예산) 10억원(국비)

*자료: 해양수산부

-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클러스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클러스터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항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축산법」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7. 자료제출, 공유재산관련 특례,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 및 부칙(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부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3조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계획 목적달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5조는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있어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7조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제정안과 관련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

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3.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2조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취소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과 제17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홍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품규격 및 부품 제공, 부품구입처 및 기술·교육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 안 제24조는 안 제22조에 따른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클러스터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관리위탁, 대부, 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대부료

징수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에서 “공유재산법”이라 함)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시 입주기업 모집, 운영 및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시설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규정으로 보이나,

관계 정부부처(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은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별도 법률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의 공유재산 특례에 관한 행정안전부 의견]

제정안의 내용	행정안전부 의견
○ 안 제24조제1항 -클러스터 시설·부지에 대해 <u>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 위탁·대부 가능</u>	○ 공유재산에 대해 수익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특례 대상자를 구체적이지 않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u>수익계약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는 점</u> 및 <u>타 기관·법인·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u> 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안 제24조제2항 - <u>사용허가·관리위탁·대부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 가능</u>	○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장기간 관리위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회차 갱신시부터는 평가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제정안에서 다시 <u>10년의 특례기간까지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u>

제정안의 내용	행정안전부 의견
	○ 사용허가·대부·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의 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등을 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이 가능하므로, <u>해당 사업 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면 현행 공유재산법령으로도 충분히 장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u> -또한, 사업목적 외의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u>사용허가·대부 갱신 시 사업의 유효성, 사용허가·대부의 필요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u>
○ 안 제24조제3항 -사용허가·관리위탁·대부 시 <u>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가능</u>	○ 공유지 상에 <u>영구시설물 축조 시, 해당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u>
○ 안 제24조제4항 -사용허가·관리위탁·대부 시 <u>사용료·대부료를 50%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 가능</u>	○ 공유재산은 <u>유상 사용이 원칙</u> 으로, 타 기관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해양수산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등 관련 입법례에 동일한 내용의 특례규정이 규정된 점을 들어 제정안과 같은 공유재산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종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겠음.

(2) 벌칙 규정

□ 다음으로 안 제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9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과 제17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안 제9조제1호의 조문내용에 따라 벌칙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임.²⁵⁾

또한, 유사입법례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거나 검정을 받지 않은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5) 신기술 지정 →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 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산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변경하며,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우선 임대 규정을 신설하며,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가목 중 “수산물”을 “수산물과 그 부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생산 후”를 “생산 전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을 “수산업”으로, “기자재”를 “기자재(어선과 그 항행 설비, 수산동물용 사료·수산생물용 의약품과 그 부속 기자재, 소금과 소금산업기자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역”을 “해역·지역”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9호 중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전담기관”을 각각 “전문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담기관이”를 각각 “전문지원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담기관의”를 “전문지원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담기관으로서”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업무수행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담기관의”를 “전문지원기관의”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수산기자재를

신기술 수산기자재로”를 “수산기자재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기술 수산기자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관리”를 “신청 및 지정·관리”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마련할 수 있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용하도록 할”을 “사용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임대료의 사용, 임대사업 운영방법”을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 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수산기자재의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기자재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2. 제15조에 따른 표준기자재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자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선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기자재

안 제16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인증표지의 기간, 사후관리 등”을 “방법 등”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호 중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안 제18조의 제목 중 “인증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표준화를”을 “품질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인증기관”을 각각 “품질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업무”를 “품질인증업무”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산기자재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수산기자재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4조제1항 중 “구성계획”을 “지정 및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붙일 수 있다”를 “붙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5조제1호 중 “전담기관의”를 “전문지원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

제한다.

안 제27조제1호 중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전문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임직원”을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2.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안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안 제28조제1항 중 “제9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과 제17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안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 기준에 적합한 시설 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자재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수산물양식기 자재클러스터 및 수산물자재 시험인증센터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및 조성한 수산물자재클러스터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수산물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가.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가. 수산물과 그 부산물----- ----- -----
나. 수산물과 그 부산물의 <u>생산 후</u>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 <u>생</u> <u>산 전후</u> ----- ----- -----
다. (생 략)	다. (원안과 같음)
라. 그 밖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u> 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u>기자재</u>	라. ----- ----- ----- <u>수산업</u> ----- ----- <u>기</u> <u>자재(어선과 그 항행 설비, 수산동물용 사료·수산생물용 의약품과 그 부속 기자재, 소금과 소금산</u> <u>업기자재는 제외한다)</u>

2. · 3. (생 략) 4. “수산물자재산업클러스터”란 수산물자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u>지역</u> 및 수산물자재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수산물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u>수산물자재산업클러스터</u>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③ ~ ⑦ (생 략)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u>제3항</u>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2. · 3. (원안과 같음) 4. --<u>수산물자재클러스터</u>----- ----- ----- -----<u>해역</u>·<u>지역</u>----- ----- ----- ----- ----- -----. 제4조(수산물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원안과 같음) ② ----- -----. 1. ~ 8. (원안과 같음) 9. <u>수산물자재클러스터</u>----- ---- 10. (원안과 같음) ③ ~ ⑦ (원안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u>제2항</u>----- ----- -----. ④ (원안과 같음)
--	--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
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
산기자재산업을 효과적으로 육
성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
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
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문
지원기관) ① -----

-----전문지원기관-----

-전문지원기관-----

-----.

② -----전문지원
기관이-----

-----.

③ -----전문지원
기관이-----

-----.

-----.

1. (원안과 같음)

2. 전문지원기관의-----

3. -----

-----전문지

원기관으로 업무수행에-----

④ 전문지원기관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수산기자재를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① (생략)
<신설>

-----.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① ---

-----수산기자재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
기술 수산기자재를-----
-----.

② (원안과 같음)

③ -----
-----신청 및 지정·관리-----
-----.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

-----마련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같음)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① (원안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수산기자재의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② · ③ (생략)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u>사용하도록</u>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임대료의 사용, 임대사업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산물자재의 품질인증) ① ~ ③ (생략)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자재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u> 1. 제8조에 따른 신기술 수산물자재 2. 제15조에 따른 표준기자재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자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선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자재 ③ · ④ (원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사용할----- -----. ⑥ (원안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 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 제16조(수산물자재의 품질인증) ① ~ ③ (원안과 같음)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기자재 인증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수산기자재를 지원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된 수산기자재의 우선구매 권고

3. (생략)

⑤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의 종류, 품목·기준·절차 및 방법, 인증표지의 기간, 사후관리 등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④ -----

-----.

<삭 제>

1. -----

-----공공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2. (원안 제3호와 같음)

⑤ -----
-----방법 등-----

-----.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

-----.

1. (원안과 같음)

2. 제16조제5항-----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생 략)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표준
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
을 지정하여 제16조제1항에 따
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

3. (원안과 같음)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품질인증을-----

-----.

② -----품질인증기관

-----.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

소) -----품

질인증기관-----

-----.

1. -----

-----품질인증기관-----

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
니한 때

3.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수산기자
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
매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산기자재
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 제품규격 정보와 수리에 필
요한 부품 및 구입처를 제공하
고, 관련 기술 또는 교육 자료
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산
기자재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
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

2. -----

-----품질인증업무-----

3.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

-----. 이 경우 수산기
자재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
는 자(이하 “수산기자재 사후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안 제2항과 같음)

②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자---

-----.

추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

<삭 제>

<삭 제>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

-----지정 및 조성-----

-----.

② (원안과 같음)

③ -----

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략)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생략)
3.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2조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취소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

-----불여야 한다.

④ (원안과 같음)

제25조(청문) -----

-----.

1. -----전문지원기관
의-----
2. (원안과 같음)
3. -----품질인증기관

<삭 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
직원

<신 설>

2.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신 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
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과 제17
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
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신 설>

-----.

1. -----전문지원기관
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6조제1항-----

-----임직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
-----제7조제1항
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
산기자재 지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제18조제1
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
정-----
-----.

② (원안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원안과 같음)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산기
자재 사후관리업 기준에 적합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한 시설 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 ----- -----.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수산물기자재클러스터 지정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수산물양식기자재클러스터 및 수산물기자재 시험인증센터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및 조성한 수산물기자재클러스터로 본다.</u>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⁹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수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전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수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어선과 그 항행

설비, 수산동물용 사료·수산생물용 의약품과 그 부속 기자재, 소금과 소금산업기자재는 제외한다)

2. “수산기자재산업”이란 수산기자재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안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수산기자재사업자”란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수산기자재클러스터”란 수산기자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구성된 해역·지역 및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산기자재의 생산·보급·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기자재의 스마트화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산기자재 관련 기술훈련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자재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보급된 수산기자재의 만족도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산기자재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문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지원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등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이하 “신기술 수산기자재”라 한다)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신청 및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한 수산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자(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수산기자재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수산기자재의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기자재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2. 제15조에 따른 표준 수산기자재
3.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수산기자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선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기자재

③ 임대사업자는 여성수산인 및 고령수산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 수산기자재를 직접 보관 및 관리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임대 수산기자재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구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 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수산기자재사업자는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수산기자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수산기자재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수산기자재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15조(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표준 수산기자재 개발 및 보급
2.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한 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그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기자재를 지원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된 수산기자재의 우선구매 권고

2. 그 밖에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⑤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의 종류, 품목·기준·절차 및 방법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은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수산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산기자재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 제품규격 정보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구입처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기자재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의 수산기자재의 수리를 위해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및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과 그 취소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

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홍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품규격 및 부품 제공, 부품 구입처 및 기술·교육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산기자재 사후관리업 기준에 적합한 시설 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기자재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및 수산물기자재 시험인증센터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및 조성한 수산물기자재클러스터로 본다.